



◆ 공고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00년문제의대응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 전자서명법제정(안) 입법예고
- 전자거래기본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1998-75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8년 7월 15일)

1. 개정이유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의 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정보화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단순한 데이터 처리 위주의 “전산망”이 음성·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정보를 처리·전송하는 통신망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 명칭도 법 개정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전산망기술기준 제정 관련규정 등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정보화 관련기관인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설립근거를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이관 규정할 수 있도록 이 법에서 삭제함.
- 다. 국가기관 등이 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산망관리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예외적으로 타 법령에 의하여 법적 효력이 부여 되는 전자문서는 전산망관리자 없이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함.
-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망의 이용 확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되나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메일폭탄 및 무분별한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 컴퓨터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공고 제1998-83호

2000년문제의대응에관한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8년 7월 28일)

1. 제정이유

컴퓨터 2000년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함으로써 정보 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의 운영자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를 운영자에게 공급한 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함.

나.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제작 및 용역에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다.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결을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

단계별 대응기한을 정함.

○ 영향평가(운영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등을 확인·분석하여 문제해결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1998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변환(문제해결의 계획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을 수정, 대체, 폐기하는 단계)을 1999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검증(변환된 정보시스템등의 성능, 기능 및 통합성을 운영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단계)을 199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시험운영(검증단계를 거친 정보시스템 등을 업무에 전반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을 1999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책협의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문제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마.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기타 산하단체 및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시스템 및 산업자동화설비의 운영자는 문제해결대응기한에 따른 소관분야의 문제해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국가사회전반의 컴퓨터 2000년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임무를 정함.

사.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활동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조정실에 컴퓨터 2000년문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함.

아.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부문의 문제해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재무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 2000년문제의 해

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우리나라의 추진상황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

차.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 장치의 운영자는 컴퓨터 2000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부공고 제1998-84호

전자서명법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8년 7월 28일)

1. 제정이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 등의 법적효력 부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률이 정하는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함.

나.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및 관리제도

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 할 능력이 있는 인증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 및 가

입자보호를 위하여 인증실무준칙의 신고, 업무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명령, 인정취소, 업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발급·효력정지·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인증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

안전·신뢰성있는 인증관리체계 운영, 전자서명키 및 인증업무관련 기록의 안전한 관리 등 인증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며, 인증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입자 등에게 손해를 준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마.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설립·운영

전자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인증기관 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서명인증 관리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

바. 전자서명 등의 보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전자서명키 도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

사. 인증업무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증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목적외 이용 및 누설금지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함.

아. 전자서명에 관한 상호인증

국가간의 전자적거래에 대비하여 정부가 외국과 인증기관 및 인증서를 상호인증하는 협정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77호

전자거래기본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일 : 1998년 8월 6일)

1. 제정이유

- 전자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새롭게 발생함
 - 전자거래는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등의 적용에 한계
- ※ 전자거래의 특징 : 비 대면적, 비 서면적, 무형의 상품, 탈국경화
- 이에 전자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임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

2. 주요골자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5조)
 - 공인인증기관이 확인한 전자서명은 서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6조)

○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 관계 확립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안 제7조)
- 또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을 규정하여 명확한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적용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 전자거래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전자거래를 하는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가상물을 개설하여 운영하는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도록 함(안 제15조)
-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의 암호화기술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의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을 허용함(안 제18조)

○ 공인인증기관의 운용

- 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자서명법(정통부)에서 규정

○ 전자거래 촉진 시책 추진

- 민간주도, 최소한의 정부규제 등 전자거래 촉진 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3조)
-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함(안 제24조)

○ 전자거래 촉진 기반 조성

- 전자거래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업이 행하는 전자거래를 기술적으로 지

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 전자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 개발등을 촉진토록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적 연계가 가능토록 함(안 제27조 및 제32조)
-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토록 함(안 제30조)

독자설문안내

독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월간 정보화사회는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창간 이후 10여년 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금번 9·10월호 “애독자카드”에 의해 독자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보다 좋은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애독자 카드를 기재하신후 절취하시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